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6. 9 선고 2020가단148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원고 A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5. 12.

판 결 선 고 2021. 6. 9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D 전 4648㎡ 중 1/2 지분에 대한 1981. 3. 20. 접수 제10113호로써 피고에게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E은 1949. 6. 3. 안동시 D 전 4648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‘1943. 1. 2. 호주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 및 F은 1981. 3. 20.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1977. 12. 31. 법률 제3094호, 실효)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(이하 ‘이 사건 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등기부는 1997. 6. 25. 중복등기 정리를 위하여 폐쇄되었다.

라. E은 1997. 12. 2. 사망하였고, 원고들은 E의 아들들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원고들의 아버지인 E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어느 누구에게도 매매를 한 적이 없고, 피고는 E이 아닌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,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1977. 12. 31. 법률 제3094호, 실효)을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,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3094호)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,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9985 판결 등 참조).

나. 이 사건의 경우

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, 이 사건 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E이 아닌 G에게 매매대금을

지급하였다거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1977. 12. 31. 법률 제3094호, 실효)을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는 것도 아니다.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민규